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 하도록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5. 센터와 수급자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인지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안됨)
2. 1~4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5등급 : 치매등급 /인지등급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이용료(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2)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1회 방문당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원
가-2	60분 이상	24,120 원
가-3	90분 이상	32,510 원
가-4	120분 이상	41,380 원
가-5	150분 이상	48,250 원
가-6	180분 이상	54,320 원
가-7	210분 이상	60,530 원
가-8	240분 이상	66,770 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일요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유급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4)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